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Washington, DC 20530

2022년 6월 21일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부장 및 기관장을 위한 비망록

발송인: 법무장관 *America Garland*

제목: 기반시설 투자 및 고용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또는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년도 자금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차별 금지법 시행

기반시설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JJA) 및 2022년도 회계연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따라 연방 정부는 신규 및 기존 보조금 프로그램에 전례 없는 규모의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IJJA 또는 통합세출법에 따라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누구도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¹

Executive Order 12250은 연방 재정 지원 수령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법령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할 책임과 권한을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에 부여합니다. 이러한 법령에는 1964년 민권법 제6편(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1972년의 교육개정법 제9편(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Act of 1972)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한 성차별 금지) 및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별 법을 포함합니다.² 이러한 금지 조항은 연방 재정 수혜자에 적용되므로 연방 기관은 직접 수혜자이든 하위 수혜자이든 관계없이 수혜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들이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 제공을 의무화하고 새로 자금이 지원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공적 자금이 차별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¹ 이 비망록은 Executive Order 12250에 해당되지 않는 연방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² 이는 2021년도의 디지털 형평성법 (Digital Equity Act of 2021) 수행을 위해 전적 또는 일부 자금이 지원된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포함하며, 이는 IJJA의 일부로 제정되었으며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제목: 기반시설 투자 및 고용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또는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년도 자금을 받는 프로그램

- Title VI, Title IX, Section 504 의 적용 가능성과 IJA 또는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특정 프로그램의 비차별 요건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눈에 띄는 공지를 게시합니다.
- 수령자에게 수혜자의 데이터 수집 및 신고 노력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여 민권 보장 및 기타 합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즉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호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 또는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해를 입거나 해당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IJA 또는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자금의 신청자 및 수령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판정 준수 검토 또는 기술적 지원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Title VI에 따라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의미 있는 접근성이 제공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 보조금 수령자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 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Section 504에 따른 의무를 인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 및 서비스의 예로는 수화 통역사, 영상 원격 통역, 필기자, 큰 활자 자료, 자막, 접속 가능한 전자 기기 및 정보 기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JA 또는 통합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차별 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현재 관행을 조사하고 이것이 차별적 행위를 감지하고 저지하는 데 효과적인지 평가합니다. 이러한 조사에는 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분석과 규정 준수 검토와 민원 조사 개시 및 종결을 위한 기관의 기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방 민권 요구 사항은 해당 연방, 주 및 지역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는 수령인의 의무와 별개이며 구분된다는 점을 보조금 수령자에게 재차 알립니다.
- 개선된 데이터 수집, 지원 및 새로운 보조금 창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보조금 창출과 시민권 집행 구성요소 간의 조정을 강화할 조치를 식별합니다.

제목: 기반시설 투자 및 고용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또는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년도 자금을 받는 프로그램

* * *

법무부 제4편 조정 규정(DOJ Title VI Coordination Regulation), 28 C.F.R. § 42.412에 따라 본인은 연방 기관이 차별 금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를 공포할 권한을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에 위임했습니다. 본인은 Civil Rights Division에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관들이 Title VI, Title IX 및 Section 504에 따라 차별 금지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 문제에 대한 법률 고문, 수령자 지침 문서 개발, 정보 공유, 교육, 대상 파트너십, 민권 집행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기타 주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Civil Rights Division은 귀하의 기관의 민권 사무실에 연락하여 Title VI, Title IX 및 Section 504의 금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현재 관행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보조금 관련 민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또는 귀하가 채택한 새로운 접근법, 수혜자가 수정된/신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계획 및 교육을 통한 플랫폼과 IJA 또는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자금 수령자와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개발을 포함하여 Civil Rights Division의 연방 조정 및 준수 부서(Federal Coordination and Compliance Section, FCS)에 통보하십시오. 또한 Title VI, 28 C.F.R. § 50.3 시행 지침 및 DOJ Title VI Coordination Regulation, 28 C.F.R. § 42.407(d)에 따라 귀하는 Title VI 하 지원을 종료, 거부 또는 집행을 위해 문제를 회부할 계획을 FCS에 전달해야 합니다.

DOJ는 민권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귀하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Civil Rights Division의 Federal Coordination and Compliance Section (연방 조정 및 준수 부서) 부장인 Christine Stoneman에게 (202) 616-6744로 전화하십시오.